

유엔아동권리협약 (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 제 37 호 (범회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호치) 중 일부

어떤 아동도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. 아동의 체포,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. (출처 및 번역: 국제아동인권센터)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. The arrest,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.

